대 출 약 정 서

한도대출약정금 금 오십억원(₩5,000,000,000)

2018년 7월 28일

차주
주식회사

대주
주식회사 데일리펀딩대부

연대보증인
이

대 출 약 정 서

다음 당사자들은 2018년 7월 28일 다음과 같이 이 대출약정(서)[이하 "이 약정(서)"]을 체결한다.

(1) 주식회사(이하 "차주")

(2) 주식회사 데일리펀딩대부(이하 "대주")

(3) 이 (이하"연대보증인")

전 문

차주는 ①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일동 에 1단지 연립주택 신축공사사업, ②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일동 에 2단지 연립주택 신축공사사업(이하 포괄하여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P2P 연계대부업자인 대주로부터 이 약정의 제 조건에 따라 대출약정금 한도 금 오십억원(₩5,000,000,000)의 범위 내에서 금전을 대출(이하 "본건 대출")받기로 하였다.

한편, 연대보증인은 피담보채무(제1조에서 정의됨)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주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이 약정의 당사자들은 이 약정의 제 조건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의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관계를 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제 1 조 용어의 정의

제 1 항 용어의 정의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약정에서 사용된 용어들은 위 전문 및 아래 각 호에서 정의되는 의미를 가진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약정의 당사자들은 이 약정서 원본 1부를 작성하여 첫머리 기재일자에 각자 적법한 서명권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 후, 대주가 원본을, 나머지 당사자들이 각 사본을 보관하기로 한다.

차주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22011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대표이사 이

이 (자서)

연대보증인

이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년월일:

(자서)

대주

주식회사 데일리펀딩대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비동 3 층 비 303 호(문정동)

대표이사 이 해 우

연대보증계약서

본 연대보증계약(서)[이하 **"본 계약(서)"**]은 2018년 7월 28일 아래 당사자 사이에서 체결된다.

(1) 채권자: 주식회사 데일리펀딩대부(이하 **"채권자"**)

(2) 채무자: [redacted]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3) 연대보증인: 이[redacted](이하 **"연대보증인"**)

전 문

①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일동 [redacted]에 1단지 연립주택 신축공사사업, ②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일동 [redacted]에 2단지 연립주택 신축공사사업과 관련하여, 채무자는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자, 연대보증인 등과 2018년 7월 28일 대출약정금 한도 금 오십억원(₩5,000,000,000)의 대출약정(서)[이하 **"대출약정(서)"**라 하며, 이후 변경 또는 수정된 약정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연대보증인은 대출약정서 제8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부담하는 피담보채무(아래에서 정의됨)를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된 용어는 본 계약에서 달리 정의되지 아니하는 한 대출약정에서 정의, 사용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제 2 조 연대보증채무의 내용

(1) 연대보증인은 대출약정서의 각 조항을 승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으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

1. 채권자: 주식회사 데일리펀딩대부
2. 채무자: 주식회사
3. 피담보채무의 범위: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포함하여 채무자가 대출약정 기타 금융관련계약에 따라 또는 그와 관련하여 채권자에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각종 금전채무(연체이자 및 일체의 손해배상의 무, 금융관련계약의 변경, 추가 및 대체된 채무를 포함)(이하 **"피담보채무"**). 단,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대출약정금의 130%를 한도로 한다.

(2) 연대보증인은 대출약정상 대출만기일이 도래하거나 채무자에게 기한이익상실 사유 또는 채무불이행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채권자가 요구하는 방법과 장소에서, 어떠한 공제나 원천징수 없이 즉시 이용 가능한 자금으로 대출원리금 전액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연대보증인의 본 조 기재 연대보증채무의 내용은 한정근보증에 해당함을 확인한다.

(4)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최고·검색의 항변권 및 분별의 이익을 가지지 아니한다.

(5) 연대보증인은 피담보채무의 기일 도래 또는 기한이익상실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태에 도달하기 전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예금 기타의 채권에 의한 피담보채무와의 상계, 공제 기타 사유를 이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아니한다.

(6)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에게 본 조 기재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피담보채무를 전액 변제 받기 전까지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인한다.

이 약정이 체결된 증거로서 당사자들은 이 약정서 1부를 작성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채권자가 이 약정서 원본을, 나머지 당사자가 사본 1부씩을 각 보관하기로 하였다.

채무자: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22011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대표이사 이

연대보증인

이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

생년월일:

※ 본건 대출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은 연대보증인이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피보증채무의 금액	보증의 범위	연체이자율	보증기간
	금오십억원	금육십오억원	16.50%	2018.07.30-2019.07.29

채권자

주식회사 데일리펀딩대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비동 3층 비303호(문정동)

대표이사 이 해 우

양도담보계약서

이 양도담보계약(이하 **"본 계약"**)은 2018년 7월 28일 아래 당사자들 간에 체결되었다.

(1) 채무자 겸 담보설정자: 주식회사(이하 문맥에 따라 **"채무자"** 또는 **"담보설정자"**)

(2) 담보권자: 주식회사 데일리펀딩대부(이하 문맥에 따라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

전 문

①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일동 | 1단지 연립주택 신축공사사업, ②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일동 2단지 연립주택 신축공사사업(이하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채무자는 본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주로서 채권자 등과 대출약정금 한도 금 오십억원(₩5,000,000,000)의 2018년 7월 28일자 대출약정(서)[이하 포괄하여 **"대출약정(서)"**]을 체결하였는바, 담보설정자는 동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자의 대출원리금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아래 업무대행수수료채권을 담보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이에 당사자들은 채권양도담보계약의 구체적인 조건과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하기로 합의한다.

제 1 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된 용어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며, 본 계약서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대출약정서에서 사용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본 계약이 체결된 증거로써 당사자들은 약정서 1부를 작성하여 각자 적법한 대표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 후 대출약정상 대주가 원본을, 나머지 당사자가 사본을 각 보관하기로 하였다.

채무자 겸 담보설정자: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22011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대표이사 이

담보권자 :

주식회사 데일리펀딩대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반동 3층 비303호(문정동)

대표이사 이 해 우

업무대행수탁자지위이전계약서

이 업무대행수탁자지위이전계약(이하 **"본 계약"**)은 2018년 7월 28일 아래 당사자들 간에 체결되었다.

(1) 채무자 겸 담보설정자: 주식회사(이하 문맥에 따라 **"채무자"** 또는 **"담보설정자"**)

(2) 담보권자: 주식회사 데일리펀딩대부(이하 문맥에 따라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

전 문

①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일동 에 1단지 연립주택 신축공사사업, ②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일동 | 2단지 연립주택 신축공사사업(이하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채무자는 본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주로서 채권자 등과 대출약정금 한도 금 오십억원(₩5,000,000,000)의 2018년 7월 28일자 대출약정(서)[이하 포괄하여 **"대출약정(서)"**]을 체결하였는바, 담보설정자는 동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자의 대출원리금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이에 당사자들은 본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과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하기로 합의한다.

제 1 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된 용어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며, 본 계약서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대출약정서에서 사용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본 계약이 체결된 증거로써 당사자들은 약정서 1부를 작성하여 각자 적법한 대표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 후 대출약정상 대주가 원본을, 나머지 당사자가 사본을 각 보관하기로 하였다.

채무자 겸 담보설정자: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22011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대표이사 이

담보권자 :
주식회사 데일리펀딩대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B동 3층 비303호(문정동)
대표이사 이 해 우 (인)

동의서

일자 : 201__년 __월 __일

수신1 : ㈜데일리펀딩대부(대주의 지위)
수신2 : ㈜(업무대행용역계약상 수탁자의 지위)

제목 : 업무대행용역계약상 계약상 지위 이전 관련

이 동의서는, 위탁자로서 본인과 수탁자로서 ㈜ 사이에 체결된 2018년 6월 1일자 업무대행용역계약(이하 **"업무대행용역계약"**)과 관련됩니다.

주식회사(이하 문맥에 따라 **"차주"** 또는 **"채무자"**)는 ①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일동 원에 1단지 연립주택 신축공사사업, ②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일동 에 2단지 연립주택 신축공사사업(이하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본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데일리펀딩대부(이하 **"대주"**) 등과 2018년 7월 28일 대출약정금 한도 금 오십억원(₩5,000,000,000)의 대출약정(이하 **"대출약정"**) 및 업무대행수탁자지위이전계약(서)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은 업무대행용역계약상 위탁자로서, 대출약정상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주의 통지가 있는 경우, 업무대행용역계약상 수탁자의 지위를 대주 또는 대주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인수인"**)에게 이전하는데 동의하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인합니다(또한, 인수인의 요청에 따라 업무대행용역계약의 승계계약 체결 등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입니다). 본인은 이 동의서를 통하여 업무대행용역계약서 제7조에 따른 위탁자와 수탁자 상호간의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합니다.

(가칭)아라동 1단지
추진위원장 양

(가칭)아라동 2단지)
추진위원장 김

자금인출요청서

수　　신 : 아시아신탁㈜

출금계좌번호 : 신한은행 100-032·　　예금주(아시아신탁㈜)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 제11조 내지 제13조에 의거하여, 아라일동 1단지　　ㅏ
ㅣ　　주식회사는 아래 인출 요청내역과 같이 자금관리계좌에서 금원의 출금을 요청하오니, 해당 금액을 아래 지정계좌로 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인출요청내역]

지급내역	지급금액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비 고
차용금		(주)데일리 펀딩대부			
합 계					

201 년　　월　　일

요청인

아라일동 1단지　　주식회사

대표자　양 ‘　　대표이사　이

별첨: 증빙자료(계약서 사본, 청구서, 세금계산서 등)

자금인출요청서

수　　신 : 아시아신탁㈜

출금계좌번호 : 신한은행 100-032-　　예금주(아시아신탁㈜)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 제11조 내지 제13조에 의거하여, 아라일동 2단지 주식회사는 아래 인출 요청내역과 같이 자금관리계좌에서 금원의 출금을 요청하오니, 해당 금액을 아래 지정계좌로 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인출요청내역]

지급내역	지급금액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비 고
차용금		(주)데일리 펀딩대부			
합 계					

201 년　월　일

요청인

아라일동 2단지 주식회사

대표자 김

대표이사 이

국세청 WWW.NTS.GO.KR

납 세 증 명 서

발급번호	T917-895-5738-807	처리기간	즉시(단, 해외이주용 10일)
납세자 인적사항	상호(법인명)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141-88-
	성명(대표자) 이	주민등록번호	
	주소(본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증명서의 사용목적	[ ] 대금수령 [ ] 해외이주 (이주번호 제 호, 이주확인일 년 월 일) [✓] 기 타
증명서의 유효기간	유효기간: 2018 년 8 월 29 일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1항 [ ] 기 타 (사유:)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의 내역 (단위 : 원)

유예종류	유 예 기 간	과세기간	세 목	납부기한	세 액	가 산 금
	해	당	없	음		

물적납세의무 체납내역 (단위 : 원)

위탁자	과세기간	세 목	납부기한	세 액	가 산 금
해	당	없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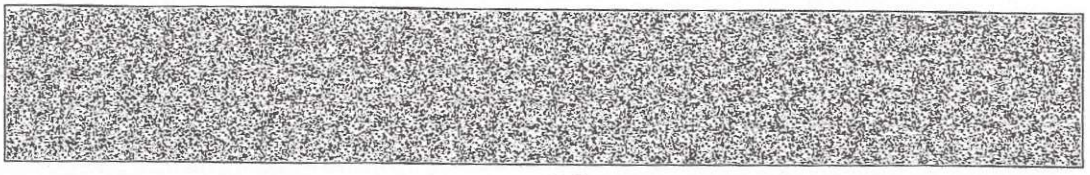
「국세징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발급일 현재 위의 징수유예액, 체납처분유예액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른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접수번호	100209807420
담당부서	민원봉사실
담 당 자	여은수
연 락 처	02-519-4228

2018 년 7 월 30 일

강 남 세 무 서 장 직인

NTS 국세청



* 본 증명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민원증명』 서비스에서 『민원증명 원본확인』 메뉴를 통해 문서발급번호로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거나,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 확인해 주십시오. 다만, 문서발급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가능합니다.
* 본 증명은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발급한 증명서이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쪽)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Local Tax Payment Certificate(Application)

발급번호 Issuance Number	2018-680-000-012872	접수일시 Time and Date of receipt	2018-07-30 02:53	처리기간 Processing period	즉시 Immediately

납세자 Taxpayer	성명(법인명) Name(Name of Corporation)	주식회사	주민(법인·외국인)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220111-(
	주소(영업소) Address	[6317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화번호 Telephone Number			

증명서의 사용목적 Purpose of Certificate	☐ 대금수령 Receipt of payment	대금지급자 Payer	
	☐ 해외이주 Emigration	이주번호 : Emigration No.	해외이주 신고일 : Date of the Report yyyy mm dd
	☐ 부동산 신탁등기 Registration for real estate trust	신탁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건물명칭 및 번호) Information of real estate trust (Location, Building name and number)	
	☑ 그 밖의 목적 Others		

증명서 신청부수 Copies of Certificate Needed	1부 Copy(Copies)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request to certify that I have no delinquent taxes except for the above-mentioned suspension of tax collection or suspension of disposition of delinquent tax as of the issued date of this certificat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the Article 5 of Collection Act for Local Taxes and Article 6(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Collection Act for Local Taxes.

2018 년(yyyy)07 월(mm) 30 일(dd)

신청인(납세자) 이 (서명 또는 인)

Applicant(Taxpayer) (signature or stamp)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명세 Suspension of Tax Collection or Suspension of Disposition of Delinquent Tax

유예종류 Type of taxes suspended	유예기간 Period of taxes suspended	과세연도 Tax Year	세목 Tax items	납부기한 Due date for payment	지방세액 Tax Amount	가산금 Penalties
해당없음						

「지방세징수법」 제 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발급일 현재 위의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I hereby certify that I have no delinquent taxes except for the above-mentioned suspension of tax collection or suspension of disposition of delinquent tax as of the issued date of this certificat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the Article 5 of Collection Act for Local Taxes and Article 6(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Collection Act for Local taxes.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I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information is correct.

1. 증명서 유효기간: 2018 년(yyyy) 08 월(mm) 29 일(dd)
   Period of Validity
2.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Reason for determining the validity date

2018 년(yyyy)07 월(mm) 30 일(dd)

서울 특별시 강남 구청장 강남구청장인

District chief